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66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박형수 · 안철수 · 조정훈
송언석 · 임종득 · 고동진
박성민 · 최형두 · 김도읍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결혼중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결혼중개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둘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효과를”을 “효과를 그 처분일부터 1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양수인등이 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상속에 의하여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얻어 결혼중개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등이 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 처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수인등이 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u>효과를</u> 승계한다.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 ----- ----- ----- --- <u>효과를 그 처분일부터 1년 동안</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 ----- ----- -----.
<u><신 설></u>	④ 양수인등이 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상속에 의하여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얻어 결혼중개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등이 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